

<p>용위원회의 이의재결 결과에 따라 도로부지로 손실 보상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측에서 사업시행자인 중구청을 상대로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현황 지목인 '대지'로 평가 요구), 지난 2000.1.19 피고인 중구가 1심에서 패소함 <p>□판결요지 - 서울행정법원 제11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명 : 토지수용 이의재결처분 취소청구 ('98구 26237) ○ 원고/피고 : 한국의환은행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 주문 : 1. 중구는 원고에게 금 14,907,633,63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p>□쟁점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가 서울시의 시공에 의하여 20m 도로 일부로 이용되게 되었으므로 도로가 아닌 대지로 보아 보상이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나 ○ 이건 도로는 외환은행 본점사옥 신축시에 원고가 조성하여 건물준공과 함께 사용하게 된 도로이므로 공특별 규정에 의거,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사실상의 도로로 보고 인근토지 가격의 3분의1로 평가한 것은 적법함 ○ 따라서 판결의 사실오인을 바로잡아 당초의 이의재결 내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소를 제기할 실익이 있음 <p>□조치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2월 4일 항소 조치 완료 ○ 우리 시 고문변호사를 추가로 수행번호사로 선임조치 계획 ○ 판결금에 대해서는 원고측으로부터 중구청에 대해 강제집행이 예상되는바, 추후 시비 지원방안 검토 <p style="text-align: center;"><u>도로부지 보상관련 소송추진 현황</u></p> <p>○ 어린이대공원~천호대교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1심에서 우리 시가 패소함에 따</p>	<p>라 임료상당의 판결금을 지급하게 된 소송추진현황 보고임</p> <p>□계쟁토지 : 성동구 광장동 산81-13(도 10,688㎡)</p> <p>□사건개요(원고 : 조석재, 피고 : 서울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7.12 준공된 어린이대공원~천호대교간 도로개설공사(노폭 50m)에 편입된 계쟁토지에 대하여 보상가격의 저렴을 이유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토지주)가 지난해 5월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임 <p>□1심 판결요지 - 우리 시 패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가 수차에 걸쳐 보상금 수령통지를 했다 하더라도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법률상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데 대한 임료상당의 재산상 손해액 649백만원을 지급하라 ※ 서울시 항소표기 : 미불보상대상 토지로서 실익이 없음 <p>□조치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촉진등에대한특례법에 따라 완제일까지의 이자가 연 25%의 고율인 점을 감안, 예비비에서 즉시 지급 조치 ○ 계쟁토지에 대하여는 미불보상예산을 사용하여 토지매입을 적극 추진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p> <p>□검토보고 요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출이유 검토 육교사용료징수조례에서 육교사용 허가시 장기간 정부시책 홍보 등의 경우는 사용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부시책 이외의 시민의 행사 홍보활동 기회를 제약하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조례안 제출이유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 개정조례안 검토 가. 조례안 제9조(사용기간 및 사용료) 제2항의 개정안은 육교사용 허가시 정부시책 홍보 등의 경우는 육교사용 기간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장기간 사용이 가능토록 되어 정부시책 이외의 시민의
--	---

행사 홍보활동 기회를 제약하므로 육교 사용 허가시 사용기간에 대한 기준범위를 구체화하고 최장 2년 등으로 제한 사용케 하는 것은 시민이용 차원의 홍보기회를 확대한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됨.

나. 동 조례안 제3항의 개정안인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별표1의3호를 적용한 점용료에 해당하는”을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별표중 제3호를 적용하여 산정한”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99.11.15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조례명과 점용료 산정기준의 “별표”의 명칭을 일치시키는 것은 타당함.

IV. 종합의견

정부시책 홍보를 위한 육교사용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민의 행사 홍보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시민을 위한 조례개정으로 문제 없는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육교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를 “1년의 기간내에서 육교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국제행사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년의 기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별표1의3호를 적용한 점용료에 해당하는”을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 징수조례 별표중 제3호를 적용하여 산정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육교사용허가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 요지

1. 제출이유 검토

중앙정부의 규제정비 차원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99. 1.29, '99.4.15) 및 같은법시행령('99. 6. 8)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중 안전점검의 실시시기에 관련한 규정 등을 개정된 법규내용으로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조례안 검토

가. 조례안 제7조(안전점검의 실시)

(1)조례안 제7조제1항의 단서조항은 안전점검의 실시 외에도 도로시설의 상태 및 노후화 등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점검 실시 주기를 강화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는 내용으로서 적절하다고 사료됨.

(2)조례안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내용중 안전점검 실시구분의 종류인 용어 명칭을 “일상점검”을 “정기점검”으로, “정기점검”을 “정밀점검”으로 변경하는 것은 '99. 1. 29 개정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제2항의 안전점검 실시구분 내용과 일치되므로 적합함.

(3)조례안 제7조 제1항 제1호중 “일상점검 : 분기별 1회이상”을 “정기점검 : 반기별 1회이상”으로 하고, 동 조례안 제2호중 “정기점검 : 2년에 1회이상(교량은 매년 1회이상)”을 “정밀점검 : 2년에 1회이상”으로 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시기를 완화하여 개정하고자 함은 '99. 6. 8 개정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제1호, 제2호의 규정내용과 합치되나

○현행 조례 제7조(안전점검의 실시) 제1항 제1호, 제2호의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의 실시주기를 현행보다 완화하는 것은 그 동안 도로시설물 등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보강공사와 유지관리로 시설물 대부분이 구조적기능의 성능향상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되지만